

< 변화의 시대, 혁신과 성장의 순환사슬 지식재산 [요약] >

□ 위기와 변혁의 시대, 지식재산의 중요성

- 코로나 장기화는, ①급격한 디지털 전환(언택트 문화 확산) 및 ②자국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(GVC) 개편을 야기
 - 이와 함께, 美·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, 美는 지재권 제도를 국익 수호 및 자국 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활용
 - ※ 中은 ①해외 핵심인력 영입, ②M&A, VC투자, ③산업스파이·사이버해킹, ④中내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진 기술·지식재산 탈취
 - ※ 美는 ①인적교류, 기술수출 및 외투 통제 및 ②강력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中의 기술 탈취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, ③親 특허정책을 통해 자국의 기술혁신을 지속 유인
 - 지식재산 제도는 '과학기술'과 '문화역량'을 경제적 성장으로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 시스템
 - ※ 기업은 지재권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배타적 이윤을 향유할 수 있고, 국가는 발명·창작의 동기부여를 통해 기술혁신·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성장 도모
- ⇒ ①국가 경쟁력 강화 및 ②경제성장 선순환을 위해,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 부상

□ 지식재산 정책 제언

< 정책방향 1 >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제도 개선	< 정책방향 2 > 지식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권리 안정성 및 소송관련 제도 등 정비	< 정책방향 3 >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유연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거버넌스 개편
↓ ○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, SW, BM 등에 대한 강력한 지재권 보호(특허 적격성,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 대응) ○ 업무상 발명·저작물의 권리귀속, 보상체계 개선	↓ ○ 심사심판 역량 강화 (심사·심판 인력 증원 등) ○ 손해배상·소송제도 개선 (증거수집제도 선진화) ○ 적극적인 지식재산 창출 활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 감면(Patent Box)	↓ ○ 지식재산 정부조직 개편 (지식재산처 신설) ○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편 (대통령이 의장인 지식재산 전략회의로 확대 개편) ○ BH 지식재산비서관 신설

1 [시대적 이슈]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지식재산권

① 데이터 보호와 이용확산 및 지식재산 정책의 개선 필요

- (배경)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데이터가 부상 → 데이터의 법적 위상이 불분명하고 지식재산적 보호·활용에 관한 합의 부재
- (검토)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의 자유보장과 조건설정, 데이터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필요

② 디지털 제조시대 도래 및 디지털방식에 의한 특허침해 대응 필요

- (배경) 디지털 제조시대에는 3D 스캐너와 3D 데이터파일에 의한 제품제조가 가능 → 개인이 특허품의 제조 및 침해의 주체로 등장
- (제안1) 산업상 이용가능성(공업성), 실시개념 등 기초적 개념을 디지털 제조시대에 부합되게 재정립
- (제안2) 간접침해 규정 정비를 통한 디지털 특허침해 대응 필요

③ SW·비즈니스 모델(BM) 특허출원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

- (배경)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SW/BM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, BM 특허 최신동향 파악 및 변화된 정책에 대응 필요
- (제안) 비대면 서비스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, 성공사례, 산업동향, 정책지원 및 관련 제도 등 정보제공 포털 제안

④ 기술과 콘텐츠 융합 환경에 따른 직무저작의 권리귀속 체제 변경

- (배경) 디지털 전환에 따라 SW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기술과 콘텐츠 융합이 대두되나, 직무저작과 직무발명간 보호체제는 현격한 차이
- (제안1) 형평성 제고 및 창작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직무저작물 권리귀속체제에 대한 창작자주의 원칙 채택 필요
- (제안2)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이 모두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켜야 하며, 저작권 양도추정 필요
- (제안3) 다른 규정·계약 등이 없는 한 사용자 등에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, 동일성 유지권은 제한규정을 별도로 마련

①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

- (배경)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술경쟁을 더욱 치열하나,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이슈 대두
- (제안) 퇴직 및 전직으로의 왜곡된 선택, 기술이전 부진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고,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및 기타소득으로 인정 필요

② 특허박스 제도 도입 필요성

- (배경) 기업이 혁신성과를 지재권으로 획득·보호하고, 수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체계가 필요하나, 현재는 R&D 세액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세금 투입에 따른 효과 극대화 측면에서 비효율 존재
- (제안1) 특허박스제도 도입의 쟁점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, R&D 세액공제 절감액 범위 내에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특허활용 제품의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안
- (제안2) ‘시범도입 → 정책성과 검증 ↔ 점진적 확대 또는 폐지’의 방식을 통해 단계적, 점진적 도입 절차를 통해 추진

③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필요성

- (배경) 최근 지재권 침해, 기술유출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, 입증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대응 한계가 있는 상황임
 - * 지재권 침해소송의 문제점: 합리적 손해배상 곤란, 소송기간 장기화
- (제안)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‘증거의 구조적 편재’로,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자료제출명령제도의 개선과 ②자료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, ③전문가 사실 조사 절차의 신설, ④피고의 영업비밀 보호조치와 위반시 제재 조치 강화 등 필요

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편 및 권한 강화

- (배경) 지식재산기본법 제정(2011)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족 →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·총괄·조정·평가 등 기능 미약
- (제안1) 지재위를 '지식재산전략회의(의장:대통령)'로 개편
 - * 실질적인 IP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, 중장기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, 지식재산 정책·사업 성과평가와 예산심의, 부처별로 산재된 규제·집행 및 관련사업 등에 대한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부여
- (제안2) 지식재산전략회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

② 지식재산처 신설

- (배경) 산업재산권, 저작권 등 유사 기능·사업 중복으로 비효율성 발생, 융합이 필요한 기술문화 융합의 시대에 유연한 정책수립 곤란
 - *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청(산업재산권·新지식재산권), 문화부(저작권), 농림부(식물신품종·지리적표시), 환경부(유전자원) 등 부처별로 분산
- (제안1)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의 지식재산처 신설
 - * 지식재산 국가전략 수립, 정책 총괄, 지식재산전략회의 보좌, 심사심판 등 정책기능 집중
- (제안2) 다양한 부처·산업분야에 걸친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지원, 조사·분석·평가, 빅데이터 연계분석 등 정책추진체계 마련

③ 청와대 지식재산보좌관 신설

- (배경) 지식재산 정책이 각 부처 및 부처와 관련된 수석실별로 분산되어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·집행·조정 기능이 부족
 - *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관심 유도가 어려워 뉴노멀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국가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
- (제안)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·추진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식재산전략회의 심의·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지식재산보좌관 신설

④ 심사·심판 및 소송 품질제고를 위한 행정부·사법부의 역량 강화

- (배경)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최근 3년간(2016-2018) 평균 46.2%로 일본의 23.8%, 미국의 26.8%(2016-2017의 2년간)에 비해 상당히 높아 권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
 - 최근 5년간(2014-2018) 우리나라의 특허권자의 1심 승소율은 평균 20%에 불과, 보유 특허가 해당 제품의 시장 지배력 및 기업의 경쟁력에 효과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
 - 반면, 중국의 경우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약 60%,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최고 90%(텍사스 동부지법 기준)에 육박
- (제안1) ①신속·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해 심사인력, 심판지원인력 증원, ②특허전문판사제도 도입, ③기술심리관, 재판연구관, 조사관 등 소송지원 인력 증원 필요
- (제안2) 심사심판관, 특허전문판사, 소송지원인력 등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식재산 관련 사법부·행정부 교류 강화

지식재산 제도의 선순환 사슬



- IP-R&D 강화 및 특허 품질 제고
- IP Big-data 분석기반 국가 R&D 효율성 제고
- IP 중심의 국가 R&D 관리체계 마련

- 지식재산거버넌스: 행정·사법·정책
- 직무발명&직무저작 보상제도
- IP교육 강화 및 실무인력 양성
- 지식재산&인접제도: 조세, R&D, 금융
- 디지털IP 제도: AI&Big-Data, BM, SW적격성
- 권리안정화: 심사·심판 역량 소송관련 사법제도

- IP Big-data 활용
- IP 금융: 투자&융자
- IP 사업화·창업
- IP 서비스비즈니스 육성

- ※ IP-R&D :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R&D의 길잡이로 삼아, R&D 효율성을 높이는 지식재산 관점의 R&D 수행방식 (특허는 경제주체가 스스로 돈을 지불하여 만들어낸 시장지향적 기술정보 ⇒ 경쟁사 기술현황, 기술트렌드 등 파악 가능)
- ※ BM 발명 특허적격성 : (判例) 순수한 영업방법이나 추상적 아이디어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받을 수 없고, 하드웨어와 연동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만 특허 가능
- ※ SW 발명 특허적격성 : AI 알고리즘(데이터의 수집·처리·변환 등) 그 자체는 추상적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특허 불가